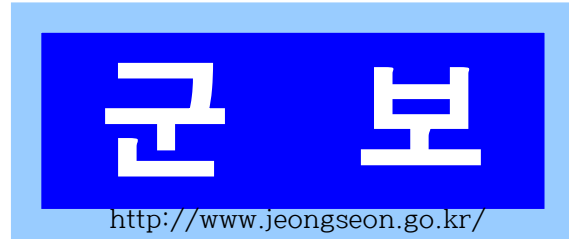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1호 2011. 9. 21.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61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6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82호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7
- 정선군규칙 제118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502호 2011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20
- 정선군공고 제2011-50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1
- 정선군공고 제2011-507호 분묘개장공고(1차)..... 23
- 정선군공고 제2011-512호 『정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24
- 정선군공고 제2011-514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 공모.... 30
- 정선군공고 제2011-520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33
- 정선군공고 제2011-521호 2011년 여행바우처사업 선정결과 공고..... 34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9. 21.

정선군 조례 제2261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청사 건립”을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청사건립”을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으로 한다.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선군재무회계 규칙”을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군청사 건립</u>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 (생략) <신 설> 3. 기타 군수가 <u>청사건립</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지방재정법</u> 및 <u>정선군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u>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u>-----. 1.~2. (현행과 같음) <u>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u> 4. 기타 군수가 <u>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u>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u>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 <u>「정선군 재무회계규칙」</u> -----.

제 정 이 유

- 중앙정부의 청사건축 자제요청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청사건립의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바, 청사건립 시까지 청사건립 기금 일부로 노후 된 현 청사의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의 용도(제4조)
- 기금의 전출(제5조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9. 21.

정선군 조례 제226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로 <u>500미터</u>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 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 다)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u>1킬로미터</u> - - - - - - - - - - - - -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전통시장	1. - - - - - - - - - -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③ (생략)	2.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06.30.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규 칙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9. 21.

정선군 규칙 제1182호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을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장제7절(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자치법규집 등의 발간 및 관리

제34조(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의 발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간 당시 효력이 있는 정선군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수록한 정선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자치법규집 등”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매체(CD 등)로의 제작도 가능하다.

제35조(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의 제공) ①군수는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이하 “자치법규정보”라 한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 등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자치법규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자치법규정보의 관리) 기획감사실장은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자치법규집 등과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u>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u> 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 -----「 <u>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u> 」----- -----.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 (생략)	제7조(보완 및 반려)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5. (현행과 같음)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후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 -----「 <u>지방자치법</u>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②(생략) 1. (생략) 2. 검토의견서:제6조제2항제2호 <u>각목의 1</u>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작성 ③(생략)	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 ③(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심의회는 <u>군수</u> , 부군수,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③(생략)	제16조(구성) ①-----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3. (생략)	제18조(심의회의 기능)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질의문 반려)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10. (생략)	제29조(질의문 반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10. (현행과 같음)
제3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3. (생략)	제32조(심사대상)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3.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록범위) <u>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이 있는 군의 조례·규칙을, 훈령·예규집에는 훈령·예규·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u>	제34조(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의 발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간 당시 효력이 있는 정선군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수록한 정선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자치법규집 등”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매체(CD 등)로의 제작도 가능하다.
제35조(발간) 기획감사실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 등의 대본을 발간하고,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폐되는 사항을 추록으로 연2회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제35조(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이하 “자치법규정보”라 한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 등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자치법규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배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자치법규집 등은 군 실·과·소, 읍·면·출장소, 정선경찰서, 정선군교육청, 도관계부서 등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배부수량은 당해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의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36조(자치법규정보의 관리) 기획감사실장은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자치법규집 등과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법령집 2. 강원도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3. 정선군 자치법규집 4. 정선군 훈령·예규집	<삭 제>
제38조(관리책임자) ①법령집을 보관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5일이내에 가재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관리점검) ①기획감사실장은 법령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점검결과 추록 가재의 소홀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록의 배부 중지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변상책임) 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삭 제>
제41조(소송의 수행)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3. (생략)	제41조(소송의 수행) ①(현행과 같음)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3.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③(생략) ④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u>각호의 1</u> 과 같다. 1.~3. (생략)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③(현행과 같음) ④-----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3. (현행과 같음)
제53조(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2. (생략)	제53조(상소포기)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인터넷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종이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의 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자치법규집을 전자매체(CD 등)로 제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4조)
- 인터넷 자치법규정보 서비스 제공 규정 신설 (제35조)
-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의 의무적 발간·관리 규정 삭제 (제8절)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9. 21.

정선군 규칙 제118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총 계		564	266	11	86	24	85	92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33	215	6	52	17	65	78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3	10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 기술	1			1			
	6급 소계	121	67	3	9	5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1			1			
	농업·지도사	2			2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7급소계	141	73	1	18	6	19	24
	행정	48	26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5	2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4			2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8급 소계	97	39	0	18	4	18	18	
	행정	23	9			0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9급 소계	47	23	0	5	1	7	11
		행정	13	5				5	3
		세무	3						3
		사회복지	8	4				0	4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4	2				1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1	1	0	0	0	0	0		
	연구사 소계		1	1	0	0			
	학예연구·별정		1	1					
지도직 계			19	3	0	16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7	3	0	14			
	농촌지도사		14	3		11			
	농촌지도사·농업 연구사		3			3			
별정직 계			12	0	0	12	0	0	
	6급상당 소계		11			11			
	보건진료원		11			1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98	46	5	6	7	20	14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급 소계		15	11	0	1	2	1	0
	토목	1	1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1	0				1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3	2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6	8	1	0	2	5	0
	토목	1	0			1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0	
	영사	1	1					
	운전	4	0	0	0		4	0
	필기	1	1					
	워드	6	5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31	11	2	2	1	8	7
	토목	3	3					
	전화상담	0	0					
	통신	0	0					
	전기	1				1		
	기계	5					2	3
	운전	9	1	1	1		3	3
	필기	3	2	0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8	4		0	0	3	1
10급 소계		32	13	2	3	1	6	7
	토목	1	1					
	통신	0	0					
	전화상담	1	1					
	전기	1	1			0		
	기계	1				0	0	1
	화공	0						
	열관리	1	1					
	운전	9	3		3		1	2

		위생	0	0				
		워드	1	0	1			
		전산	0	0				
		필기	6	4		1	1	
		조무	10	1	1	0	4	4
		통신·전기	1	1				

개 정 이 유

- 생활지도직렬이 농촌지도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직(사무직)의 일반직 전환근거의 마련에 따라 조무직렬의 사무직렬 전직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4명(변동없음)
- 직렬별 정원 조정
 - 지도직 : 농촌지도관 증1,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1,
농촌지도사 증2, 생활지도사 △2
 - 기능직 : 사무8급(워드) 증3, 사무9급(워드) 증2, 조무8급 △2,
조무9급 △2, 운전8급 △1기금의 용도(안 제4조)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1-50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최돈학 외 670인(홈페이지 참조)

주소또는거소 : 홈페이지 참조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1년 08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9월 30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9. 05.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50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1. 9. 5.

정 선 군 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안내

- 열람기간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열람대상 : 1,324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원)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0.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의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507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532번지	전	1	

2. 개장사유 :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장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봉안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정선 하늘공원 납골당
-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033-560-2485)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 09. 16.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512호

『정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정선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신동읍 조동리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1. 9. 9.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정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 공고기간 : 2011.09.09 ~ 2011.09.23(15일)
3. 지적공부 시행 : 2011. 09. 08.
4. 확정시행 지적공부 (총 4필지 / 504,137.6㎡)

토지소재	종전 지적공부(폐쇄)		확정 지적공부	
	필 수	면 적(㎡)	필 수	면 적(㎡)
신동읍 조동리	134	504,233	4	504,137.6

5.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친환경대중골프장토지확정조서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등록번호	
신동읍	조동리	516	체	293,923.60	정선군	3237	
신동읍	조동리	517	임	2,173.80	정선군	3237	
신동읍	조동리	518	임	5,800.50	정선군	3237	
신동읍	조동리	519	임	202,239.70	정선군	3237	
합계				504,137.60			

변경전(임야)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위치	지번			(㎡)	
1	조동리	산34-1	임야	8,612	8,612	정선군
2	조동리	산35-2	임야	368	368	정선군
3	조동리	산35-3	임야	4,817	4,817	정선군
4	조동리	산36-2	임야	4,351	4,351	정선군
5	조동리	산37-5	임야	853	853	정선군
6	조동리	산37-7	잡	256	256	정선군
7	조동리	산39-1	임야	24,626	24,626	정선군
8	조동리	산40	임야	16,529	16,529	정선군
9	조동리	산40-2	임야	7,648	7,648	정선군
10	조동리	산40-3	임야	6,612	6,612	정선군
11	조동리	산40-4	임야	4,006	4,006	정선군
12	조동리	산40-5	임야	51,346	51,346	정선군
13	조동리	산41	임야	21,262	21,262	정선군
14	조동리	산42-2	임야	17,653	17,653	정선군
15	조동리	산42-4	임야	538	538	정선군
계				169,477	169,477	

변경전 (토지)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위치	지번			(㎡)	

16	조동리	39-1	대	357	357	정선군
17	조동리	39-2	대	4,549	4,549	정선군
18	조동리	40	전	3,610	3,610	정선군
19	조동리	41	전	4,099	4,099	정선군
20	조동리	42	전	8,856	8,856	정선군
21	조동리	43	전	572	572	정선군
22	조동리	44	전	2,317	2,317	정선군
23	조동리	45-10	대	295	295	정선군
24	조동리	45-11	대	3,856	3,856	정선군
25	조동리	45-12	대	151	151	정선군
26	조동리	45-13	대	3,059	3,059	정선군
27	조동리	45-14	대	299	299	정선군
28	조동리	45-15	대	765	765	정선군
29	조동리	45-16	대	12,594	12,594	정선군
30	조동리	45-17	대	179	179	정선군
31	조동리	45-18	대	184	184	정선군
32	조동리	45-19	대	808	808	정선군
33	조동리	45-20	대	1,732	1,732	정선군
34	조동리	45-21	대	23,107	23,107	정선군
35	조동리	45-22	대	16,905	16,905	정선군
36	조동리	45-23	대	16,921	16,921	정선군
37	조동리	45-24	대	476	476	정선군
38	조동리	45-25	대	706	706	정선군
39	조동리	45-26	대	5,430	5,430	정선군
40	조동리	45-33	대	12,091	12,091	정선군
41	조동리	45-34	대	495	495	정선군
42	조동리	45-35	대	858	858	정선군
43	조동리	45-36	대	20	20	정선군
44	조동리	45-37	대	106	106	정선군
45	조동리	45-38	대	4,133	4,133	정선군
46	조동리	46	전	1,845	1,845	정선군
47	조동리	49	전	3,478	3,478	정선군
48	조동리	59	대	506	506	정선군
49	조동리	60	대	724	724	정선군
50	조동리	61	대	568	568	정선군
51	조동리	61-1	대	2,536	2,536	정선군
52	조동리	62-1	대	1,068	1,068	정선군
53	조동리	62-2	대	268	268	정선군
54	조동리	62-3	대	1,098	1,098	정선군
55	조동리	62-4	전	11,504	11,504	정선군
56	조동리	63-3	대	1,041	1,041	정선군

57	조동리	63-4	대	112	112	정선군
58	조동리	64	대	3,373	3,373	정선군
59	조동리	64-1	대	62	62	정선군
60	조동리	74	대	1,339	1,339	정선군
61	조동리	76	전	823	823	정선군
62	조동리	77	전	1,329	1,329	정선군
63	조동리	78	전	2,688	2,688	정선군
64	조동리	79	전	1,669	1,669	정선군
65	조동리	80	전	2,674	2,674	정선군
66	조동리	81	전	1,412	1,412	정선군
67	조동리	82	전	876	876	정선군
68	조동리	83	전	10,192	10,192	정선군
69	조동리	84	전	2,334	2,334	정선군
70	조동리	85	전	1,977	1,977	정선군
71	조동리	86	전	3,018	3,018	정선군
72	조동리	87	전	1,782	1,782	정선군
73	조동리	88	전	3,197	3,197	정선군
74	조동리	89	전	2,360	2,360	정선군
75	조동리	90	전	1,788	1,788	정선군
76	조동리	90-1	도	505	505	정선군
77	조동리	90-4	전	99	99	정선군
78	조동리	90-5	전	292	292	정선군
79	조동리	90-6	잡	87	87	정선군
80	조동리	90-7	전	213	213	정선군
81	조동리	90-8	도	358	358	정선군
82	조동리	90-9	전	77	77	정선군
83	조동리	90-10	전	329	329	정선군
84	조동리	90-11	전	606	606	정선군
85	조동리	90-12	전	652	652	정선군
86	조동리	90-13	대	2,991	2,991	정선군
87	조동리	90-14	도	508	508	정선군
88	조동리	90-15	대	368	368	정선군
89	조동리	90-16	전	3,904	3,904	정선군
90	조동리	90-17	도	506	506	정선군
91	조동리	90-18	전	4,930	4,930	정선군
92	조동리	90-19	전	4,217	4,217	정선군
93	조동리	90-20	전	351	351	정선군
94	조동리	90-21	도	1,677	1,677	정선군
95	조동리	90-22	전	1,423	1,423	정선군
96	조동리	90-23	잡	273	273	정선군
97	조동리	90-24	전	8,869	8,869	정선군

98	조동리	90-25	전	5,835	5,835	정선군
99	조동리	90-26	전	933	933	정선군
100	조동리	90-27	도	2,122	2,122	정선군
101	조동리	90-28	전	3,205	3,205	정선군
102	조동리	90-29	전	23,459	23,459	정선군
103	조동리	90-30	임야	7,940	7,940	정선군
104	조동리	90-31	잡	76	76	정선군
105	조동리	90-32	전	388	388	정선군
106	조동리	90-33	도	61	61	정선군
107	조동리	90-34	전	19,232	19,232	정선군
108	조동리	91	전	1,332	1,332	정선군
109	조동리	92-3	잡	1,220	1,220	정선군
110	조동리	92-5	잡	22,608	22,608	정선군
111	조동리	93-1	잡	511	511	정선군
112	조동리	93-2	잡	136	136	정선군
113	조동리	94	대	2,301	2,301	정선군
114	조동리	95	대	2,569	2,569	정선군
115	조동리	96-1	대	1,413	1,413	정선군
116	조동리	137-1	채	1,180	1,180	정선군
117	조동리	137-7	잡	25	25	정선군
118	조동리	151-27	대	455	455	정선군
119	조동리	151-28	대	701	701	정선군
120	조동리	151-29	대	596	596	정선군
121	조동리	151-30	대	383	383	정선군
122	조동리	151-31	대	918	918	정선군
123	조동리	151-32	대	739	739	정선군
124	조동리	151-33	대	345	345	정선군
125	조동리	151-34	대	490	490	정선군
126	조동리	151-35	대	614	614	정선군
127	조동리	151-36	대	861	861	정선군
128	조동리	151-43	대	1,037	1,037	정선군
129	조동리	151-44	대	128	128	정선군
130	조동리	151-45	대	160	160	정선군
131	조동리	151-46	대	173	173	정선군
132	조동리	151-47	대	128	128	정선군
133	조동리	151-48	대	10	10	정선군
134	조동리	162-1	대	66	66	정선군
	계			334,756	334,756	

지목별 현황 지목별
현황 지목별
현황

임야대장

임야	14	169,221
잡종지	1	256
	15	169,477

토지대장

대	59	140,217
도로	7	5,737
임야	1	7,940
잡종지	8	24,936
전	43	154,746
체육용지	1	1,180
계	119	334,756

정선군공고 제2011-514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공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1. 9. 15.

정 선 군 수

1. 지정대상 : 방문목욕, 방문간호 (2개소 지정)

－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심사점수 상위기관 선정

2. 지정 주체 : 정선군수

3. 지정 기간 : 2011. 10. 5 ~

－ 지정 이후 정기적인 평가시 평가기준 부적합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됨

4. 신청기관의 자격

－ 지자체에 법인, 단체, 기관의 허가·등록·신고를 마친(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부·지회·가맹점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함.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의함

※ 다만,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된 방문목욕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1. 9. 15. ~ 9. 24.일까지 (10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복지팀
- 제출서류
 - o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o 정관 1부 (법인만 제출)
 - o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o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사업안내 별지 제11호서식)
 - o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사본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사본 중 택 1부
 - o 기타 제공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에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o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서 1부.
 - o 기타 제공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5. 유의사항

- o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시설현황)을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실
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를 취소함.
- o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며
(바우처 결제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 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o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o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o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
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
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5. 선정절차 및 방법

-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기관을 우선 선정 하
되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
-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심사기준(심사항목) : 기관현황, 급여제공 능력, 급여관리 계획, 인력관리, 기타 사항 등
- ※ 심사점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이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 순으로 기관 선정
- 결과 통보 : 심의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 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복지팀 장애인담당자(☎ 033-560-2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520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이사감”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9. 15.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1.09. 16. ~ 2011.09. 30.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제 목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 통보				
2.당사자 (매도인)	성 명	(주)가보 (116511-0030336)				
	주 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 2층 201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위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91, 산92번지(토지및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매계약 체결(중간생략 등기)				
4.처 분 하 고 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 금구백구십만원(9,900,000원)				
5.법 적 근 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6.기타(문의처)	제 출 처	기관명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남 원 수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033-560-2263 (Fax 033-560-2307)			

정선군공고 제2011-521호

2011년 여행바우처사업 선정결과 공고

2011년도 여행바우처사업 수혜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15.

정 선 군 수

수혜자 선정결과

○ 복지시설단체

복지시설명	대표자	주 소	선정인원	지원액(원)	비 고
프란치스코의 집	오순희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6	20명	3,000,000	중증장애인 (인솔자 포함)

❖ 여행참가자 명단 별첨

바우처(카드) 이용안내

○ 발급문의 : 신한카드 1544-7000 (발급 확인 02-2629-1575)

◆ 위 전화번호 외의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전화응대 주의

○ 사용기한 : 2011. 12. 31일까지 (2011. 11. 30일까지 사용 권장)

○ 카드사용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에서 여행상품 견적 요청을 통해 여행사 선정 (임의 계약체결 금지)

○ 카드결제

－ 신한카드 가맹점 여행사 : 자동결제

－ 신한카드 가맹점이 아닌 여행사 : 자부담 결제 후 환급

 대표문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팀 033-560-2368